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5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10080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단10620 판결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5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넷째 줄의 '피고'를 '매도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